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7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정희용·서천호·김선교

이종배 · 김상훈 · 최은석

이인선 · 임이자 · 이양수

백종헌 • 김성원 • 김형동

강대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간은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조(「수산업법」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제한·정지하거나"를 "제한 또는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정지하거나"로, "제한·정지 또는"을 "제한,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제7항 중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로 한다.

제3조(「어선법」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8항 중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로 한다.

제4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변경"을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지·변경"을 "변경·중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변경"을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지·변경"을 "변경·중지"로 한다.

제47조제2호 중 "중지・변경"을 "변경・중지"로 한다.

제6조(「항만법」의 개정)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변경"을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로, "시설장비"를 "6개월 이내의 시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지·변경"을 "변경·중지"로 한다.

제110조제7호 중 "중지 • 변경"을 "변경 • 중지"로 한다.

제7조(「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 제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심층 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	
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	
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	
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	
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	
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u><후</u>	
<u>단 신설></u>	우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
	정지 기간은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 ③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	4
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	
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	
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	
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u>제한 · 정지하거나</u> 면허를 취소	제한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하거나 입어를 <u>제한·정지 또는</u>	정하여 정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한,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제48조(신고어업) ① ~ ⑥ (생	제48조(신고어업)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⑦
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u>정지</u> 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u>여 정지</u>
⑧・⑨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8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	
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u>정지</u> 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
	<u>지</u>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39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②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u>제38조</u>	<u>제38조</u>
<u>제2항 및 제3항</u> 을 준용한다.	<u>제3항</u>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u>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u>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생 략)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
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	
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공사의 <u>중지·변경</u> , 시설물 또	<u>변경·중지</u>
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	
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	
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	
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위	유와 위반의	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부렁으
로 정	한다.		

④·⑤ (생 략)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u>중지·변경</u>, 시설물 또 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 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 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 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③ (생략)

<u>.</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
1. ~ 4. (현행과 같음)
2
<u>변경·중지</u>
③ (현행과 같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	
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u>중지·</u>	변경 또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u>는 6개월 이내의 중지</u>
・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	
회복이나 <u>시설장비</u> 사용중지,	<u>6개월 이내의 시설장비</u>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	②
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u>중지ㆍ</u>	<u>변경·</u>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중지
·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	
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	
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 9.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1. ~ 6. (현행과 같음)
7
<u>변경·중지</u>
8.•9. (현행과 같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①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
	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
	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폐쇄조치 등) ①・② (생	제46조(폐쇄조치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
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에 따른다.
폐쇄조치의 일시 · 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u>한다.</u>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	<u><삭 제></u>
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